부천시 공고 제2022 - 2057호

「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 내용을 「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022년 8월 16일 부 천 시 장

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○ 우리시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3조에 따른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포함하는 「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」를 제정(조례 제555호, 1983. 1. 1. 공포・시행)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「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는 그 설치목적 및 내용이 「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」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"이 조례를 폐지함"

3. 자치법규안: 별도 첨부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: 2022년 9월 5일(월)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(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)

다. 기재내용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라. 제 출 처: 부천시장(수도행정과)

○ 주 소: 부천시 길주로 210(중동, 부천시청), 7층 수도행정과

○ 전화(팩스): ☎ 032-625-3229, 팩스: 032-625-3224

○ 전자우편: dyhan123@korea.kr